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2호서식] <개정 2017. 1. 31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**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**

등기필 통지서의 토지의 표시내용이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등기필 통지서							지적공부					불합치 내 용
등 기 연월일	등기 번호	토지의 표시					토지의 표시			소유자		
	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 (㎡)	지번	지목	면적 (㎡)	성 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	주 소	

끝.

발 신 기 관 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